

의안번호	제 65 호
의결연월일	2003. 5. 27

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견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5. 20. 예산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5. 22.

다. 상정일자 : 2003. 5. 26.

제106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기획감사실장 : 최봉일)

가. 제안이유

-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
-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
-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
- 8개 시·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 받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협의회 명칭: 서해안권행정협의회

○ 협의회 구성 : 8개 시·군

- 서산시, 보령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

○ 규약주요내용

- 협의회위원 : 서산시장, 보령시장, 서천군수, 청양군수, 홍성군수,
예산군수, 태안군수, 당진군수(8명)

- 회 장 : 회의개최지 시장·군수가 하되 시·군 직제순에 의거
윤번제

- 임 기 : 6개월

- 협의 사항 :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 중 다음사항

-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-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
-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-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-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-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-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-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
- 회 의

· 정기회의 : 매년 3월과 9월 각 1회 개최

· 임시회의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
있을 때

-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
 - 상임위원 :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업무 담당 실·과장
 - 비상임위원 : 안전에 관련된 실·과장

- 미합의 사항 처리
 - 미합의된 안전은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1회에 한하여 다시 상정 후 미합의시 안전으로 상정 불가
 - 2회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

- 경비부담 : 각 협의회원이 공동부담
- 규약변경 : 협의회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

○ 규약시행일 : 2003. 7. 1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장순근)

-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하여 자치행정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 등에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8개 시·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간의 협의 등으로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,

- 그동안 사전준비 회의와 창립회의를 통하여 8개 시장·군수가 공동으로 협의회 규약 서명 등으로 마련된 규약안이 의결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7개시·군과의 처리방안과 문제점은 없는지 대안도 필요하며,

- 제4조(조직)제2항의 회장임기가 6개월로서 짧은 기간 윤번제로 맡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는지와, 제11조의 필요한 경비부담에 있어 예산의 미확보로 인한 지출방법의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,
- 제8조(실무협의회)제2항 상임위원과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.
- 끝으로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있어 서북부지역의 8개 시·군이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, 이를 통하여 우리지역과 관련된 국가적인 대단위 현안사업에도 특별히 공동대처 하여 처리될 수 있는 방안마련도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